37.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

□ 민원개요

○ 지방세납세증명서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 완납 및 지방세납부 내역을 확인하고자 지방세 제 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제 증명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재무과	처리기간	즉시	수수료
근거법령	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			아래 참조

□ 지방세 제증명의 종류

○ 지방세 납세증명서(지방세 완납증명서) - **수수료(무료)**

-발급일 현재 발급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
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**수수료(800원)**

-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과세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

※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(과세사실없음)을 발급.

○ 지방세 납부확인서 - **수수료(무료)**

-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□ 업무흐름도

○ 지방세 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지방세 담당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.

-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.

○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,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.

○ 제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.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재무과 세정담당	930-3126 , 930-3125	